



< 자본시장법 전환에 따른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수시 공시 >

2011.05.16.

당사에서 운용 중인 해당 투자신탁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전환되어 집합 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공시합니다.

1. 대상 집합투자기구

구 분	기존 투자신탁 명칭	변경 투자신탁 명칭
1	신영엄브렐러공사채채권투자신탁 제 1 호	신영엄브렐러공사채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 제 1 호(채권)
2	신영엄브렐러국공채채권투자신탁 제 1 호	신영엄브렐러국공채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 제 1 호(채권)
3	신영엄브렐러홀합투자신탁 제 1 호	신영엄브렐러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 제 1 호(채권홀합)
4	신영엄브렐러코스닥주식투자신탁 제 1 호	신영엄브렐러코스닥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 제 1 호(주식)
5	신영엄브렐러중소형주주식투자신탁 제 1 호	신영엄브렐러중소형주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 제 1 호(주식)
6	신영엄브렐러대형주주식투자신탁 제 1 호	신영엄브렐러대형주 증권 전환형 투자신탁 제 1 호(주식)

2. 변경 사유

: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30조 및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지속적인 판매를 위하여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의 적용을 받도록 전환

3. 주요 변경 내용

: 적용법규 변경으로 인한 집합투자기구 명칭 및 용어 변경 등

4. 변경 시행일 : 2011년 5월 15일

5. 자세한 변경 내용 등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(<http://dart.fss.or.kr>), 한국금융투자협회 (<http://www.kofia.or.kr>), 집합투자업자(<http://syfund.co.kr>)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